

국무조정실

우 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/ 전화 (02) 734-9345 / 전송 (02) 720-1162
규제개혁2심의관실 과장 김석민 담당 사무관 주시경

문서번호 국무규제 05090-179

시행일자 1999. 2. 5.(년)

발음 받는 곳 참조

참조 규제개혁담당관

취 급		국무조정실장	국무총리
보 존			
조정관	기획봉	기획부	기획실의관
심의관	고		
과 장	W		
기 안	주시경		협 조

제목 조례 · 규칙상의 행정규제정비목록 통보 지시(국무총리지시 1999-5호)

1. 「99년도 규제정비지침」(국무총리지시 1998-30호, '98.11.21)관련입니다

2. 지난해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한 행정규제 개혁의 성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· 규칙상의 행정규제 정비까지 완료되어야 완벽하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.

3. 따라서 각 부 · 처 · 청에서는 '98 규제개혁 추진관련 법령의 제 · 개정에 따른 조례 · 규칙상의 행정규제 정비목록(폐지 · 개선)을 조속히 작성하여 '99년 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통보하고, 그 결과를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99년 2월말 기준으로 공포 · 시행이 확정된 법령의 규제정비 목록 작성 · 통보

나.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재입법 추진중인 법률등은 공포 · 시행이 확정되는 대로 목록 작성 · 통보

다. 특히 건축 · 건설, 환경, 보건 · 복지등 규제사항이 많거나 복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시 부처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 및 현장지도 등 실시

// 계 속 //

4. 또한 행정자치부는 각 부·처·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무 조정실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

국 무 총 리

받는 곳 가15,16,20,31~47, 52~55, 57~67

국무조정실

110-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-6 / 전화(02)738-2857~8 / 전송(02)738-2859
복지심의관실 / 과장 최병록 / 서기관 권만혁

문서번호 국무사회 01022-8

시행일자 1999. 2. 24 ()

수신 수신처 참조

참조

취급		국무조정실장	국무총리
보존			
조정관	이경식	복지심의관실	국무총리
심의관	이숙운	기획심의관실	
담당관	● 최병록		
기안	★ 권만혁		협조

제목 「의료인력 수급운영 및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부처간 업무협조지시」
(국무총리지시 제14호, '94. 4. 8) 폐지

「의료인력 수급운영 및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부처간 업무협조 지시」(국무총리지시 제14호, '94. 4. 8)를 규제개혁 등과 관련하여 폐지하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국무총리지시 제14호 ('94. 4. 8) 폐지내용 1부. 끝.



국 무 총 리

수신처 : 교육부, 보건복지부

國務總理指示 廢止內容

《 國務總理指示 第14號 (1994. 4. 8) 》

제목 : 의료인력수급운영 및 공공의료기관설립에 따른 부처간 업무협조 지시

1. 현재 각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력수급 운영과 의료기관의 신·증설 및 지역변경 등으로 의료인력과 시설의 적정관리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
2. 의료인력 수급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공공의료기관의 적정분포 및 배치로 의료 시혜의 균점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첨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협의대상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>

1. 의료관계 교육기관 (신·증설 및 정원의 증·감축)
 - 가. 의료법 제2조에 의한 의료인 종별에 해당하는 각급교육기관
 - 나. 의료기사법 제2조에 의한 기사종별에 해당하는 각급 교육기관
 - 다. 사설강습소설치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사설강습소중 간호보조원의 양성시설
2. 의료기관 (병원급 이상의 신·증설 및 지역변경)
 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립하는 의료기관
 - 나.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하는 의료기관
 - 다. 국고 1/2 이상의 보조를 받아 설립하는 의료기관

《 廢止事由 》

- 간호보조원 양성시설을 신·증설하거나 정원을 증·감축하는 경우 간호보조원 수급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·시행토록 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어 정부행정규제계획에 의거 폐지
- 의료인 종별 및 의료기사 종별에 해당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정원을 증·감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있음
-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신·증설 및 지역변경의 경우 의료법 제3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, 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별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